

1. 개정이유

해양사고 원인규명 자문 전문연구기관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추가 지정하고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며, 심판변론인 등록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사고 원인규명 자문 전문연구기관 추가(안 제3조제4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원인규명 자문 전문 자문연구기관에 추가 지정함

나.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운영 추가(안 제27조제1항~제3항)

법 제88조의3에 따른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범위,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 내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

다. 심판변론인 등록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신설(안 별지 제2호 서식)

심판변론인 등록신청시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조회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란을 신청서에 추가

라. 준해양사고 통보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8호서식)

준해양사고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권고를 제
공하기 위해 준해양사고 관련 수집정보를 세분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예정

3)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협의 예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88조의3에
따른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접수, 심판청구 등 조사업무 진행사항 등록
2. 심판접수, 심판재결 등 심판업무 진행사항 등록
3. 재결집행사항 등록 및 징계자 관리
4. 각종 해양사고통계자료 작성 및 표출
5. 재결서, 의견진술서 등 조사·심판자료 등록 및 열람
6. 그 밖에 조사·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심판원장은 해양사고정보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해양
사고 조사·심판정보의 수집,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중앙심판원장은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심판변론인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의 소재지		
자격취득 근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2장	수입인지(1천원) (이 난이 부족할 때에는 뒷면에 붙여 주십시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의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화번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람 및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신청인

준해양사고 통보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통보자 인적사항	성명 (대표자명)		회사명 (해당시)	
	연락처		전자우편	
준해양사고명				
준해양사고 종류 []충돌 []접촉 []좌초 []침몰 []화재 []오염 []인명 []기관 []기타				
선종 []벌크선 []컨테이너선 []자동차선 []여객선(카페리선, 화객선 등) []탱커선 []액화가스선 []케미컬선 []예선 []기타				
선박상태	[]항해 중 []정박 중 []계류 중		발생일시	
발생장소			지리적 위치	
기상상태	[]맑음 []비 []안개 기타()		바람방향/세기	NW / Knots
해상상태	시정	Miles	파고/조류	Meters / Knots
개요				
원인				
개선사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해양사고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자

(서명 또는 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귀하

작성 방법

1. “준해양사고 종류”는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의 종류를 말하며, 해양사고 종류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충돌 : 항해중이거나 정박중임을 불문하고 다른 선박과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간 충돌을 포함한다). 다만, 수면하의 난파선과 충돌한 것은 제외한다.
 - 나. 접촉 : 다른 선박이나 해저를 제외하고 외부물체나 외부시설물에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 다만, 수면 아래의 시설물 등과 선저가 부딪쳐서 침수되거나 선체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좌초로 분류한다.
 - 다. 좌초 : 해저, 암초, 수면 아래의 난파선 또는 간출암(셀물 때만 드러나는 바위)이나 해안가 등에 얹히거나 부딪친 것.
 - 라. 침몰 : 악천후 조우, 외판 등의 균열이나 구멍, 절단 등에 의한 침수의 결과 가라앉은 것.
 - 마. 화재 : 불로 인하여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
 - 바. 오염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및 폐기물 등의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피해가 생긴 것
 - 사. 인명 :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 아. 기관 : 「선박기관기준」 제2조에 따른 주기관, 보일러, 주요한 보조기관 또는 주기관·보일러·주요한 보조기관 등에 연료·윤활유·공기·냉각수 등을 공급하기 위한 펌프 등 선박추진과 관련된 보기 등이 손상된 것.
2. “발생장소”는 조타실, 기관실, 갑판 등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며, 지리적 위치는 위도·경도 또는 항구명을 기재할 수 있다.
3. “선박상태”는 「해사안전법」 제2조 정의를 따른다.
4. “개요”는 상황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준해양사고의 관련자, 장소, 시기 및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5. “원인”은 인적오류, 구조, 기계, 장비, 외부요인 등 분석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 “개선사항”은 잠재적 손실 및 심각성을 고려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전문연구기관) 법 제4조제3 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전문연구기관)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 <u>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u> 」 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 단
<u><신 설></u>	제27조(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운 영) ① <u>중앙심판원장은 법 제88 조의3에 따른 해양사고정보시 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u> 1. <u>사고접수, 심판청구 등 조사 업무 진행사항 등록</u> 2. <u>심판접수, 심판재결 등 심판 업무 진행사항 등록</u> 3. <u>재결집행사항 등록 및 징계 자 관리</u> 4. <u>각종 해양사고통계자료 작성 및 표출</u> 5. <u>재결서, 의견진술서 등 조사 · 심판자료 등록 및 열람</u>

6. 그 밖에 조사·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심판원장은 해양사고정보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해양사고 조사·심판정보의 수집,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중앙심판원장은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